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2. 2 선고 2019가합520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윤기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변론 종결2022. 10. 6.

판결 선고2023.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그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주식회사 D(다음부터 'D'라 한다)'와 금전거래를 하던 사람이고, D는 대표이사 E가 운영하는 비철금속 가공업체로서 경북 상주군 F 외 2필지1) (다음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 지상에 공장 및 기계(다음부터 각 '이 사건 공장' 및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던 법인이다.

2) C은 개인사업체인 비철금속가공업체 'G'의 대표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고는 위 C의 동생인 H의 전처이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금전거래

1) 원고는 2017. 10. 26. D를 상대로 '2016. 9. 1. 대여한 변제기 2017. 8. 30. 약정이자 연 24%인 대여금 채권 1억 5천만 원(다음부터 '제1대여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7. 11. 14. 확정되었다(다음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2) D의 대표인 E는 2017. 5. 4.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2017.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다음부터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차용증상 채권을 '제2대여금'이라 한다).

다. D와 G 사이의 계약이행약정

1) 'D는 이 사건 공장 및 기계를 2017. 11. 1.부터 2020. 10. 31.까지 G 측이 사용하도록 하고, G 측은 D에게 기계사용 담보금액으로 174,496,400원(다음부터 '이 사건 담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D의 미납전기료 및 임금 대납, G에 대한 미수금 지급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내용의 2017. 11. 1.자 계약이행약정서(갑 제4호증, 다음부터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약정서에는 D 대표이사 E 및 G 대표 C의 기명, 날인이 되어있다.

2) D는 2018. 1.경부터 2018. 10.경까지 G에게 다음과 같이 '임가공비' 또는 '임대료'항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다음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1	2018. 01. 31.	임가공비	16,190,000원	을1-1
2	2018. 02. 27.	임가공비	9,980,000원	을1-2
3	2018. 03. 31.	임가공비	24,514,495원	을1-3
4	2018. 04. 30.	임가공비	25,340,740원	을1-4
5	2018. 06. 25.	임가공비5월 임대료	6,184,970원1,320,000원	을1-5
6	2018. 06. 25.	6월 임대료	1,320,000원	을1-6
7	2018. 07. 25.	7월 임대료	1,320,000원	을1-7
8	2018. 08. 25.	8월 임대료	1,320,000원	을1-8
9	2018. 09. 30.	9월 임대료	1,320,000원	을1-9
10	2018. 10. 31.	10월 임대료	1,320,000원	을1-10

라. D에 대한 경매절차

1) D의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경매신청으로 2017. 12. 18. D 소유의 이 사건 공장부지, 이 사건 공장, 이 사건 기계 등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K, 다음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이 사건 공장부지 및 다음에서 볼 화재사고 후 잔존한 이 사건 공장의 잔존 부분2) (다음부터 '이 사건 잔존 공장'이라 한다)은 2019. 5. 24.(다음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 매각기일'이라 한다) 일괄하여 'L 주식회사'에 매각되었다.

마. 이 사건 공장 화재사고 발생 등

1) 이 사건 공장에서 2018. 4. 27.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기계 및 이 사건 잔존 공장 외 나머지 공장 부분은 소훼되었다.

2) E는 'D의 대표인 E가 보험사를 상대로 이 사건 화재사고로 소훼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미수 등으로 기소되었는데(대구지방법원 2019고단2342, 다음부터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사건에서 경찰은 이 사건 화재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또는 파쇄기 내부에서 축열 등에 발화된 화재사건으로 판단되며 다른 범죄혐의는

없음'이라고 판단하였다.

바. 피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C은 2019. 3.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2019. 4. 30. 전세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 C은 2019.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7억 7천만 원에 매도하고(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9.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위 2019. 4.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3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M'인 근저당권등기에 대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사. D의 재산상태 등

1) 적극재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축탁결과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 전인 2018. 2. 13. 기준으로 이 사건 공장부지의 가치는 555,130,000원, 이 사건 공장건물의 가치는 655,481,800원, 이 사건 기계의 가치는 1,300,710,000원 등으로 합계 2,513,321,800원(= 이 사건 공장부지 555,130,000원 + 이 사건 공장 655,481,800원 + 이 사건 기계 1,300,710,000원)이었으나(다음부터 '제1감정결과'라 한다)이고,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 후인 2018. 10. 22. 기준 이 사건 공장부지의 가치는 586,975,000원, 이 사건 잔존 공장의 가치는 187,231,000원, 이 사건 기계의 가치는 평가 외로 합계 774,206,800원(= 이 사건 공장부지 586,975,000원 + 이 사건 잔존 공장 187,231,000원, 다음부터 '제2감정결과'라 한다)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소극재산 이 사건 경매절차 매각일까지 이 사건 공장부지 및 잔존 공장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개인 N에 대한 각 근저당권(다음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합계액은 41억 6,500만 원(= 중소기업은행 10억 6,800만 원(3억 1,200만 원 + 7억 5,600만 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23억 400만 원(19억 8,000만 원 + 3억 2,400만 원) + 신용보증기금 5억 7,300만 원(4억 9,200만 원+8,100만 원) + N 2억 2,00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3 내지 7, 9 내지 11, 16 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도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 및 D의 무자력 상태

1) 원고는 D에게 제1, 2대여금을 대여하였고 그 변제기도 도래하였다.

2) 한편 D는 적극재산으로 ① 제2감정결과상 774,206,800원으로 평가된 이 사건 공장부지 및 잔존 공장 매각액과 ②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임대차계약 목적물인 이 사건 잔존 공장 외 나머지 공장 및 기계 반환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액(제1감정결과와 제2감정결과의 차액에 상응하는 최소 1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채권(다음부터 '이 사건 원고 주장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 등이 있는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근거당권 채권최고액 41억 6,500만 원 등이 있어 무자력 상태이다.

나. 피대위채권(채권자취소권)의 발생

D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 주장 손해배상채권을 가졌다 할 것인데, C은 이 사건 원고 주장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사실상 적극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척 관계였던 피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원고 주장 손해배상 채권자인 D와의 관계에서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이에 원고는 D에 대한 제1, 2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를 대위하여 D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피고에게 가액반환으로 제1, 2대여금 채권액 합계 3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 존부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D에게 제1, 2대여금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D에 대한 피보전채권으로 제1, 2대여금 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대여금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1대여금 채권액 중 일부라도 변제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대여금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제1, 2대여금 채권이 모두 성립한 상태임에도 제1대여금의 지급만을 구하거나, 이 사건 지급명령 청구취지와 같은 제1대여금 원리금과 제2대여금 원금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제2대여금 채권은 제1대여금 채권과 동일한 채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대여금과 제2대여금이 동일한 채권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설령 제2대여금 채권이 별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제2대여금채권의 변제기 다음날인 2017. 7. 1.부터 상사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2022. 6. 30.까지 위 대여금채권을 불행사하였으므로 제2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대여금 채권이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위 채권에 대하여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305 판결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D의 무자력 여부

1) 적극재산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상 제2감정결과에 따른 D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공장부지 및 잔존공장의 가치의 합계 774,206,800원³⁾ (= 이 사건 공장부지 586,975,000원 + 이 사건 잔존 공장 187,231,000원)이다.

나) 원고는 이외에도 D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원고 주장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살펴볼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원고 주장 손해배상채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극재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 매각기일까지 D는 원고에게 제1, 2대여금 채권 원금 합계 3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부담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은 41억 6,500만 원이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경매절차 매각기일 당시 D의 소극재산인 제1, 2대여금 채권액 및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이 제2감정결과에 따른 D의 적극재산 774,206,800원을 초과함이 명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D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10. 6.에도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음이 추인된다 할 것이다.

다. 피대위권리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 사건 원고 주장 손해배상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한 사항은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2000. 8. 22. 선고 98다36351 판결 참조).

나)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불이행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훼손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며, 임차인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판결 참조).

다)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고, 이에 터잡아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서의 법적성격

이 사건 약정서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계약의 법적성격은 임대차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약정서상의 당사자 및 손해배상책임자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상의 임차인은 C이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D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잔존 공장 외 나머지 공장 및 기계 반환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 G를 운영하며 D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C의 동생인 H이므로 이 사건 원고 주장 손해배상채권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증인 E, O, P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인 D의 대표 E가 'G의 실제 사업주 H과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약정서에 기명, 날인은 H이 한 것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C을 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한 점, ② D의 임직원인 O, P도 'C을 본 적이 없고, H이 G의 대표인 것으로 알았다'라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D와 H 사이에는 이 사건 약정서상의 명의자인 C이 아닌 H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원고 주장 손해배상채권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화재사고에 대한 C의 귀책사유 여부

또한 앞서 살펴본 사실 및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화재사고의 원인을 전기적 요인으로 이 사건 기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을 뿐, C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은 점, ② E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이 G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을 뿐 아니라, '2017. 11. ~ 2017. 12.까지는 G의 H이 이 사건

공장 및 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2018. 1.경부터 2018. 4.경까지는 D가 G으로부터 임가공 발주를 받으며 이 사건 공장 및 기계를 사용하였을 뿐 G이 이 사건 공장 및 기계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D가 2018. 5.경부터 2018. 10.경까지 G 측에 '임대료' 항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D의 창고에 G의 고철을 보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관료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한 점, ③D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2018. 1.부터 2018. 4.경까지 G 측에 '임가공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하지 않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C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화재사고 당시 이 사건 공장 및 기계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D 측이 지배·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할 것이고, C의 이 사건 화재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

그렇다면 D는 C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피보전권리(이 사건 원고 주장 손해배상채권)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만호

판사최규태

판사박재성

별지

1) I, J,

2) 경북 성주군 F 지상 공장건물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장부지 및 잔존 공장의 실제 매각가액에 대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